

-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	2316
------------	------

2018년 2월 27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12월 18일, 문영민 의원 외 9명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12월 20일

다. 상정일자

- 제278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교통위원회(2018년 2월 27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문영민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,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“교통부령”을 “국토교통부령”으로 변경함(안 제3조제3항)

-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변경함(안 제4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정부조직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7. 12. 26 ~ 2018. 1. 3

- 의견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- 서울시장(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) : 원안동의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동수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조례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에 따른 행정각부 명칭(국토교통부¹⁾, 행정자치부²⁾)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 조례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시장이 2018년 2월 6일 제출한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」³⁾에도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법령 적합성을 위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

또한, 법제처에서 발표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·보완하여 정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조례 입법 의도를 제대로 알리고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임

1) 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, 2013.3.23., 전부개정

2) 정부조직법 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, 일부개정

3)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」(의안번호 : 2338)

제13조(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소요되는”을 “드는”으로,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도시철도 공채”를 “도시철도공채”로, “서울특별시장”을 “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의한 교통부령”을 “따른 국토교통부령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장이 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시장의 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<u>소요되는</u> 재원조달을 위하 여 도시철도법 제19조 및 제20조 에 <u>의거</u>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(이하"도시철도공채"라 한다)를 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 <u>드는</u>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공채의 발행한도) <u>도시철도</u> <u>공채의</u> 연도별 발행 한도액은 행 정안전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<u>서울특별시장이</u> 정한다.</p>	<p>제2조(공채의 발행한도) <u>도시철도공</u> <u>채</u>----- ----- <u>선</u> <u>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</u> <u>한</u> <u>다)</u>--.</p>
<p>제3조(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) ① (생 략) ② 도시철도공채의 매입의무 면제 에 관하여는 도시철도법, 같은 법 시행령 및 그에 <u>의한 교통부령</u> 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제3조(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따른 국토교통부령</u>----- -----.</p>
<p>제4조(원금상환 및 이자지급) ① 도 시철도공채의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는 제2조의2의 규정에 <u>의한</u> 발행일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 일 시에 상환한다.</p>	<p>제4조(원금상환 및 이자지급) ① -- ----- ----- <u>따른</u> -- ----- -----.</p>

② 도시철도공채의 이율은 도시
철도법시행령에서 정한 이율이하
로 하되 서울특별시장이 행정자치
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
② -----
----- 시
장이 행정안전부장관-----
-----.